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폐광지역’ 명칭을 ‘석탄산업전환지역’ 으로 변경〉
■ 이철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622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철규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0. 16.
3. 회부연월일 : 2025. 10.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사용되고 있는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는 1995년 법률 제정 이래 사용되어 왔으나 ‘폐광’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과 미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폐광지역”이라는 표현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국가 에너지정책에 기여한 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반해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명칭은 단순한 ‘폐광’의 부정적 의미를 넘어, 국가 에너지체계 변화 속에서 주민들의 삶과 지역사회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음.

이에 현행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제11조·제15조 및 제16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법률의 제명과 본문에 사용된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를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폐광지역</u>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u>석탄산업전환지역</u>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u>폐광지역</u> (廢鑛地域)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석탄산업전환지역</u>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u>폐광지역</u> ”이란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u>폐광</u> 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 -- <u>석탄산업전환지역</u> ----- ----- ----- <u>폐광</u> (廢鑛)-----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4. “ <u>대체산업</u> ”이란 석탄산업을 대체하여 <u>폐광지역</u>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4. ----- ----- <u>석탄산업전환지역</u> ----- ----- -----.
제3조(<u>폐광지역진흥지구</u> 의 지정) ① 산	제3조(<u>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u> 의 지

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4조(개발계획) ① (생략)

② 도지사는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1조제5항에 따른 이익금 중 일부가 사용되는 폐광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제5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하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시·도환

정) ① -----석탄산업전환지역-----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개발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석탄산업전환지역-----

-----석탄산업전환지역별-----

1. (현행과 같음)

2. -----

-----석탄산업전환지역-----

제5조(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

②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

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도지사가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폐광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도지사는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진흥지구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경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7조(시행자 지정의 특례) 도지사는 진흥지구에서의 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 해당 폐광지역의 주민 또는 석탄광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환경영향평가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

---.

③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

-----.

제6조(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

-----.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시행자 지정의 특례) -----

-----석탄산업전환지역-----
-----.

제9조(환경영향평가의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영향평

를 둔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한 곳에만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그 시설의 개발추진계획을 포함한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

가위원회-----.

④ -----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

⑤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

-----.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석탄산업전환지역-----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석탄산업전환지역-----

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11조의4(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탄광 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으로서 <u>폐광지역</u>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 라 30년을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 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① · 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폐광지역</u> 의 경제 진흥을 위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u>폐광지역</u>의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폐 광지역</u>에 있는 농공단지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농공단 지(이하 “지원대상 농공단지”라 한 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4(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 ----- ----- ----- <u>-석탄산업전환지역-</u>----- ----- ----- -----. 제15조(재정지원) ① · ② (현행과 같 음) ③ -----<u>석탄산업 전환지역</u>----- ----- -----. 제16조(<u>석탄산업전환지역</u>의 농공단지 에 대한 지원) ① ----- -----<u>석탄산업전환지역</u>----- ----- ----- ----- -----. ② (현행과 같음)
---	---

국내 석탄산업은 1970년대까지 이어진 석유 파동에 따라 국가의 증
산 정책 및 비축량 확대 정책 등에 힘입어 국가 기반 산업으로 성장
하여 왔으나, 이후 국제 에너지 환경의 변화로 석유가격은 하락추세인

반면, 국내 석탄 가격은 계속 상승하여 석탄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음.

이에 정부는 1988년부터 석탄산업의 자생력 제고 및 생산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비경제탄광의 정비대책을 담은 ‘석탄산업 합리화 방안’을 발표·추진하여 왔고, 지난 6월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5년도 제1차 폐광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를 폐광지원 대상 광산으로 선정한 것을 끝으로 대한석탄공사 산하의 유일한 탄광이 공식적으로 조기 폐광되었음.

그런데,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는 ‘폐광’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과 미래발전을 약화시킬 수 있고,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를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석탄산업이 위치했던 지역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과 신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반영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이에 대한 기존 폐광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개정안 이외에도 ‘폐광지역’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별도 규정 및 제도들과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실제로, 「환경보건법」 제6조제1항제7호1)은 ‘폐광지역’ 인근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을 포함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제25조제2호2)는 ‘폐광지역’의 광물 찌꺼기로 인한 광산공해방지대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용어 변경 시 이와 같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의 ‘폐광지역’과 개정안의 ‘석탄산업전환지역’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 부칙 제2조는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총 7건3)의 법률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안에 따른 법률 제명에 맞게 수정하고 있음.

1) 「환경보건법」

제6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예방 및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세워야 한다.

7.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인근 주민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2) 「토양환경보전법」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폐광지역**의 광물 찌꺼기 등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

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별소비세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문 의 처
02)6788-5468